

‘1996. 9. .

제 회 임시회

# ‘95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

결 산 검 사 위 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동료 박제국 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2인, 유경험자 2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해주셔서 '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96년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의 중점을 재정의 효율적 배분 및 운영, 예산범위내 집행, 각종 장부마감사항, 국도비 보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등 관계규정에 맞게 결산이 되었는지를 최선을 다하여 심층분석 검사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방법에 있어 대표위원이 총괄을 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정책 사항은 의회 의원이 맡고,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및 재고자산관리는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일반회계 세출전반에 대하여는 유경험자가 담당하여 검사한 바,

지방재정법령과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내무부 결산  
검사 추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결산이  
되었으나

앞으로 예산심의 및 운영에 참고할 몇가지 내용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미흡한 사안으로

'95년도까지 체납액이 80억 4천 6백만원으로 '94년도  
보다 0.7%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고액이 계속 체납  
되고 있어 부동산 압류등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는등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징수실적이 극히 저  
조한 실정으로

이는 체납액 발생방지 및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며, 체납액 발생방지  
를 위한 사전대비와 발생 체납액의 원인을 정밀분석

하는등 체납액 일소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 체납액을 최소화하므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운영에 적극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 둘째

지방세 수입의 세출예산 과소계상입니다.

세입금이 현저하게 증수될 것으로 전망되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비에 투자하여야 하나,

지방세 세입예산액의 29.6%인 402억 4천 8백만원이나 초과징수하고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조치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이 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세입예산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재원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시설공사 계속비제도의 미활용입니다.

수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은 그 총액과 년부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정-미원간도로 확.포장공사의 3개사업은 '95년도에 발주하여 2~4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공사로 계속비 제도를 활용함이 타당함에도 공사총액중에서 일정액만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수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은 총소요액과 년부액을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

세출예산 전용의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은 소요액의 정확한 산정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전용하여 세출예산을 신속적으로 운영하여야하고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함이 마땅함에도 16건에 7억 3천 9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액의 29.5%인 2억 천 8백만원은 당해년도에 집행 완료치 못하고 사고이월하는등 예산제도의 문란은 물론 전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의 전용은 예산성립후 다음 추경예산 성립시까지 예산확보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나 불가항력적인 긴급시에 한하여 적정액만을 전용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다섯째,

세출예산계상후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농촌진흥원 단양마늘시험장의 무인경보시설과 행정진  
화 가입청약비 3백 1십 5만 1천원등 7건에 4억 7천 3  
백만원은 예산을 계상한 후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처  
리 하였는바

이는 예산을 계상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집행치 못하였다고 사료되나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여건변동, 계획변경 취소등 집행사  
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  
에 투자하는등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  
다.

여섯째

시설공사 계약변경 과다입니다.

'95년도 발주한 시설공사에 있어서 사전 정밀조사에  
의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공사를 시공함이 타당하  
나 실시설계의 미흡으로 인하여 공사시공중 현지여건

의 변동, 지역주민의 건의 또는 반대 등의 이유로

1억원이상 총발주공사 47건중 61.7%에 해당하는 29건을 계약변경하였고 금액으로는 당초계약금액 371억 2백만원의 4.9%에 해당하는 18억 2천 3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약변경하였는바,

이는 당초 실시설계시 정밀한 조사와 현지여건, 지역주민 건의 등을 판단치 못한 결과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설공사는 완벽한 실시설계를 한 후 시공하고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계약변경하는 사례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일곱째,

시설공사 사고이월운영과 계약공기설정 부적정입니다.



시설공사는 사전에 기본설계를 정확히하여 소요금액, 공사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연도내에 완료하여야 하나

'95년도에 발주한 공사중 도로공사 30건 치수공사 9건, 건축공사 2건등 총 41건의 공사를 연내 준공이 불가능한데도 연도중에 발주하여 명시 또는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또한 공사는 공종에 따라 공사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계약기간이 불가피하게 양년도에 걸쳐 시행할 사업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회계연도말을 이유로 설계공기를 단축하여 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공하고 년말에는 동절기 등을 이유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익년도에 설계상 잔여공기를 연장하여 계약하는등 회계질서 문란과 계약의 신의성실 의무에도 위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연도말에 집행하는 공사와 소요공기가 연말  
까지 부족한 공사는 가급적 계약을 억제하고 명시이  
월이나 계속비 사업등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몇가지 예산집행에 불합리  
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  
록하여 건전하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으로 알찬 도정  
과 지방화 시대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  
리라 사료되오나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원활히 해왔  
느냐와

앞으로 예산편성·심의 및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한 자료를 추구함에 있으므로 저의 설명으로 질  
의 토론없이 가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